

하이(Hi) Teen 공부합시다

재외국민 투표권 인정 됐다는데

헌법재판소 결정 왜 8년만에 뒤집혔나

인터넷 발달·경제력 신장 해외 부재자 투표 쉬워져

미국 사는 삼촌도 한국 대선 투표할 수 있죠

하이(Hi) Teen 공부합시다

재외국민은 누구를 말합니까.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합니다. 해당 국가에 사는 영주권자와 해외주재원·유학생 등을 말하며 외국에 3~5년 정도씩 근무하지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외교관도 이 범주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중 투표권자는 얼마나 됩니까. ▲외교부에 따르면 재외국민 664만명 중 영주권자는 171만명, 해외주재원·유학생 등 단기체류자는 115만명(2005년 기준)입니다. 둘을 합하면 286만명입니다. 이 중 선거권을 갖는 19세 이상 인구의 숫자는 분명하지 않지만 국내의 경우 인구 대비 73.5%가 유권자인데 이에 대입하면 대략 210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는 어떻게 합니까.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국내 주소가 아예 없어집니다. 대통령선거에선 거주지가 문제되지 않지만 지역구 대표를 뽑는 총선에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선거위와 한나라당은 대선과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에서만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 출마한 총선 후보에게까지 확대하려면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최종 거주지를 선거구로 하거나 호적에 등재된 주소를 선거구로 원용할 수 있으며 영국의 사례처럼 본인이 직접 주소지를 별도로 등록해 선거구로 인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재외공관에 나가서 투표하는 방법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부재자투표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편·인터넷을 이용하려면 비밀선거의 원칙을 어떻게 지켜 줄 수 있느냐와 본인 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후속대책이 필요합니다.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즉 피선거권도 생깁니까. ▲이런 관점에서 현재는 일정기간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인정할 선거법에 대해서도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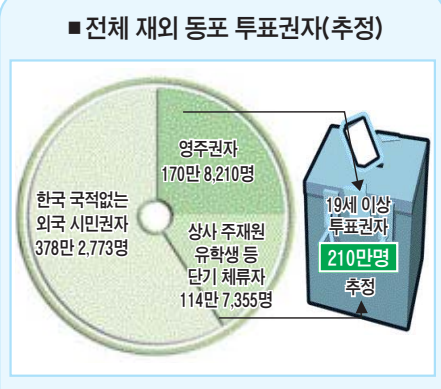
시카고에 사는 교민, 해외주재원, 유학생 등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했다. 지난해 8월 시카고에서 열린 제 11회 한인축제 모습. /연남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도 국내 각종 선거에 투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외국민은 누구이고, 어떤 방식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재외국민은 누구를 말합니까.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합니다. 해당 국가에 사는 영주권자와 해외주재원·유학생 등을 말하며 외국에 3~5년 정도씩 근무하지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외교관도 이 범주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중 투표권자는 얼마나 됩니까. ▲외교부에 따르면 재외국민 664만명 중 영주권자는 171만명, 해외주재원·유학생 등 단기체류자는 115만명(2005년 기준)입니다. 둘을 합하면 286만명입니다. 이 중 선거권을 갖는 19세 이상 인구의 숫자는 분명하지 않지만 국내의 경우 인구 대비 73.5%가 유권자인데 이에 대입하면 대략 210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는 어떻게 합니까.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국내 주소가 아예 없어집니다. 대통령선거에선 거주지가 문제되지 않지만 지역구 대표를 뽑는 총선에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선거위와 한나라당은 대선과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에서만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 출마한 총선 후보에게까지 확대하려면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최종 거주지를 선거구로 하거나 호적에 등재된 주소를 선거구로 원용할 수 있으며 영국의 사례처럼 본인이 직접 주소지를 별도로 등록해 선거구로 인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재외공관에 나가서 투표하는 방법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부재자투표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편·인터넷을 이용하려면 비밀선거의 원칙을 어떻게 지켜 줄 수 있느냐와 본인 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후속대책이 필요합니다.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즉 피선거권도 생깁니까. ▲이런 관점에서 현재는 일정기간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인정할 선거법에 대해서도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국에 거주하는 서울시의원, 일본에 거주하는 광주시의원도 생길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은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나. ▲중앙선거위에 따르면 선진국은 대체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6월 현재 전체 92개국 중 재외거주자를 위해 해외부재자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2002년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가입국 중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고 있는 나라는 한

거와 유럽의회선거에 한해 인정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투표권 부여 대상이 다소 탄력적으로 변화해 왔다는 점입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비교적 최근인 2005년 5월부터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선거에 한정해 국외 부재자 투표를 하고 이탈리아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재외국민 투표제를 처음 적용했습니다. ▲돈(비용)이 많이 들텐데요. ▲국회 권영길 의원실(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산정자료에 의뢰해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07년



재외동포 지역별 분포

Table showing the distribution of overseas citizens by region: Asia (2,470,000), USA (3,580,000), Europe (530,000), etc.

선거비용 374억 예상 국내보다 3~4배 더 들어 출마도 가능...법 고치면 외국거주 의원 생길수도

국·터키·멕시코·헝가리 등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미국·영국·프랑스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해외 단기 체류자나 영주권자는 물론 이중 국적자에게도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경우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역사 또한 짧지 않습니다. 미국은 1955년부터 '연방투표보조법'에 의해 군인과 선원·해외 근무공무원 및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한 인정하는 방식으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왔습니다. 이후 1975년 '해외시민투표법'에 의거, 해외국민 모두에게 연방선거 부재자 투표를 인정했습니다. 프랑스는 1945년 국외 거주 군인과 공무원이 대리투표 형식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뒤 1975년에는 의회선거, 이듬해인 1976년에는 대통령선거까지 재외국민의 선거참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영국은 총선

대통령선거에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경우 투표용지 발송·회송과 선거관리비를 포함, 총 374억 2천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선거관리를 약 276만명 정도 보고, 그 가운데 부재자 신고자가 166만명, 실제 투표를 한 사람이 159만명 가량 될 것이라고 가정한 수치입니다. 국내 거주자의 1인당 선거비용보다 3~4배 더 든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도 적용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외교통상부는 현행 선거법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12월 10차례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모의 재외국민 투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최소 선거전 6개월까지'를 실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얘기해 왔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대체입법이 늦어지면 올해 내내 내내 선거에 적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선거에 대한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은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선거관리를 담당할 기구가 필요하고 투표소 설치, 신분확인 절차, 투표 방식, 선거운동방법,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개정안에 담아야 합니다. 또 부연권은 단기 체류자에게만 우선 투표권을, 야권은 전면 재외국민 투표권 허용을 주장하는 등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 국회 입법이 늦어질 우려가 큼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퍼져 있는 재외국민에 대한 부재자투표를 실시할 업무를 내지 못했다.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제대로 알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인터넷의 대중화로 정보 접근이 쉬워지고, 인터넷 투표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기술상 어려움은 이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박탈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납세와 국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재외국민에게 왜 선거권을 주느냐는 1999년 반대 논리에 대해 현재는 이번엔 "우리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납세나 국방의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예정하고 있지 않은 뿐 아니라 재외국민도 방위복무를 이행할 수 있고, 방위복무와 무관한 여자들이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는 또 1999년에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실무상 어려움 등을 내세워 권리 제한은 합당하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즉 해외거주 국민의 부재자투표를 하려면 선거기간을 연장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선거비용 증가 등 국가적 부담이 가중되고 해외는 공정선거 감시체제가 미약해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번엔 현재는 "선거비용 증가 및 국가적 부담 증가가 예상되더라도 우리 경제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없고, 비용 부담 우려만으로 민주국가에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인부동산컨설팅 011-625-0510 (쌍문동 한국병원 옆) 식당, 입식, 핫집, 레스토랑, 고전문점, 학원입대, 토지매매, 모텔매매

금보부동산컨설팅 011-602-2233 (신수동 543-51) 산당매매, 학원입대, 토지매매, 모텔매매, 주유소매매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062-973-9174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함) 매매상환임영, 차용보증부지, 전용가능사업부지, 모 집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삼우빌딩에서 50m) 급매물 상담 후 10일내 책임중개, 급히 구합니다, 급히 팝니다

법원경매 전문회사 - 불 앞시가는 사법물 -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입찰장 옆) 상담전화: (062) 222-8446